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 . . .<br>(제 회) |      |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 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 | 국무위원 ○○○<br>(환경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 . . .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인 제조·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하고,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개정(법률 제20232호, 2024. 2. 6. 일부개정, 2025. 8. 7. 시행)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항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

## 3. 주요내용

가. 법 제10조제1항에서 개정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에 맞춰 관련 조문 정비  
(안 제10조의3, 안 제13조)

나. 화학물질안전원에 위임하였던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관련 업무와 법 제19조의3 신설에 따른 화학물질 자료의 적정성 검토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(안 제31조제2항·제5항)

다. 법 제42조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 등의 조치와 관련한 권한·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, 화학물질안전원 및 한국환경공단에 위탁(안 제31조제1항·제2항·제5항)

라.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했던 법 제42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(안 제31조제4항·제5항·제6항)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 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기준을”을 “개별 제조·수입자가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·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·수입량이 10톤인 경우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3조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을 “화학물질을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·수입하려는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.

제31조제1항제5호 중 “법 제42조”를 “법 제42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조치(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)

제31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”을 “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4호 중 “법 제42조”를 “법 제42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4호의2

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의2.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조치(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)

제31조제4항 중 “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

2.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기술 개발·조사 및 보급에 관한 업무

제31조제5항제2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의6부터 제1호의8까지, 제2호,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, 제12호,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0호(중전의 제1호의8) 중 “법 제42조”를 “법 제42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2호(중전의 제2호) 중 “법 제42조의2제1호”를 “법 제42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“법 제42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”를 “법 제42조의2제5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2.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

른 변경신고의 접수 및 통지

7. 법 제19조의3에 따른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적정성 검토
11.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 등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 및 조치(조치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보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
13.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·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·검사(한국 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보고와 검사 등으로 한정한다)
16. 제29조의2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에 관한 업무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의3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제10조의3(연간 국내 총 제조·수입량의 기준 등) ① 법 제10조 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<u>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</u></p> <p>1. <u>개별 제조·수입자가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·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·수입량: 1톤</u></p> <p>2. <u>개별 제조·수입자가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·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·수입량: 10톤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3조(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)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”이란 <u>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.</u></p> <p>1. (생략)</p> | <p>제10조의3(연간 국내 총 제조·수입량의 기준 등) ① -----<br/>-----<br/>----- <u>개별 제조·수입자가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·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·수입량이 10톤인 경우</u>를 ----.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)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|

1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조·수입하려는 화학물질로서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연간 국내 총 제조·수입량이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·고시된 화학물질

가.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·수입하려는 자

나.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·수입하려는 자

1의3. ~ 9. (생략)

제31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(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)의 공개

<신설>

1의2. 화학물질을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·수입하려는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<삭제>

<삭제>

1의3. ~ 9.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-----  
-----  
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법 제42조제1항-----  
-----  
-----

5의2.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조치(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



6. ~ 10. (생략)
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.

1. (생략)

2.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 화학물질 신고의 접수 및 통지

3.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·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

4. ~ 13. (생략)

14.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(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)의 공개

<신설>

15. ~ 18. (생략)

③ (생략)

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)

6. ~ 10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.

1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3.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-----  
-----  
-----  
--

4. ~ 13. (현행과 같음)

14. 법 제42조제1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4의2.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조치(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)

15. ~ 18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(이하 “한국환경공단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1. (생략)

<신 설>

1의2. ~ 1의5. (생략)

④ -----  
----- 다음 각 호의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

2.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기술개발·조사 및 보급에 관한 업무

⑤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 화학물질 신고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및 통지

3. ~ 6. (현행 제1호의2부터 제

<신 설>

1의6. · 1의7. (생 략)

1의8.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(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)의 공개

<신 설>

2. 법 제42조의2제1호 및 제8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

<신 설>

2의2. · 2의3. (생 략)

1호의5까지와 같음)

7. 법 제19조의3에 따른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적정성 검토

8. · 9. (현행 제1호의6 및 제1호의7과 같음)

10. 법 제42조제1항-----  
--

11.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 등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 및 조치(조치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보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

12. 법 제42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 ---

13.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·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·검사(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보고와 검사 등으로 한정한다)

14. · 15. (현행 제2호의2 및 제2

|  |  |
|--|--|
| <p>3. <u>제29조의2제6호에 따른 등록 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과 관련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한다.</p> <p>1. <u>법 제42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</u></p> <p>1의2.·2. (생략)</p> <p>3. <u>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기술개발·조사 및 보급에 관한 업무</u></p> <p>4. (생략)</p> | <p>호의3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16. <u>제29조의2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에 관한 업무</u></p> <p>⑥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1. <u>법 제42조의2제5호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<p>1의2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|
|--|--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| (044) 201 - 6784 |